

#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「성균관대학교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학사 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참여학과)** 일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간협동과정 참여학과는 별표 1과 같다.

**제3조(박사학위과정의 전공)** ①박사학위과정 각 학과 학생의 전공은 교과목이수상황, 학위논문주제 및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장이 결정한다.

②전공결정에 필요한 전공의 종류와 전공의 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## 제 2 장 학사운영

### 제 1 절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) 및 대계열 입학생 학과진입

**제4조(대학원과정 입학)**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.)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대학원과정 입학자격)** ①「학칙」 제18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.

②일반대학원 학·연·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「학칙」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본교와 학·연·산협동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**제6조(대학원과정 편입학자격)** ①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, 이수학과와 취득학점 등은 따로 정한다.

②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7조(재입학)**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「학칙」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사경고 제적자, 「학칙」 제61조에 의한 징계제적자 및 제적 후 10년 이상 경과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별도의 재입학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등록금(재입학금을 포함한다.)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재입학 심사)** ①재입학 심사는 소속 학장과 학장이 위촉한 2인의 전임교원이 이를 행한다.

②재입학 심사는 “가” 또는 “부”로 판정하며,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.

**제9조(재입학의 제한)**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. 다만, 입대휴학 만기 제적자 및 「학칙」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학사과정 대계열입학생의 학과진입)** ①2개 이상의 학과가 설치된 대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계열에 설치된 학과 중 하나의 학과에 진입하게 한다.

②학과진입 대상 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지망학과별로 순위를 정하여 학과진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학과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### 제 2 절 휴학·복학·등록금 반환

**제11조(일반휴학)** ①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개인사정, 질병, 기타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.
2.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. 단, 당 학기 신입학생,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규정된 자연재난 또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자 또는 학기 중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(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함)에 한한다.
- ②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「학칙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.
- ④등록금분할납부자는 제11조제1항,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하여 휴학을 하여야 할 경우 미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입대휴학)** ①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입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입영기일 연기,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「학칙」에 의거 제적된다.

**제13조(임신·출산·육아휴학)** ①임신·출산·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서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)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다.
- ③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은 재학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4조(창업휴학)**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기간 내에 창업지원단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휴학원서(소정 서식) 1통과 사전심사 결과, 창업 증빙,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창업휴학은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5조(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)** ①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 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학사시스템을 통해 총장에게 입대휴학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학점인정 신청과목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, 과제,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(일반휴학자의 복학)**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.

- ②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. 다만, 「학칙」 제23조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입대휴학자의 복학)** ①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복학을 신청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.

③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휴학 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
④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.

**제18조(등록금의 반환 등)** ①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17조제4항에 의한 입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「학칙」 제28조제2항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「학칙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.

②‘등록금분할납부제’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제적되며, 해당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제적일을 기준으로 「학칙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.

### 제 3 절 모집단위간 이동

**제19조(학사과정 모집단위간 이동)** ①학사과정의 모집단위간 이동(이하 “전과”라 한다)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,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**제20조(일반대학원 전과)**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전과는 교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

**제21조(전문대학원 분야 변경)** 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분야변경신청서(소정서식)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2조(특수대학원 전과)** ①특수대학원(교육대학원 제외) 재학생으로서 전과(전공변경을 포함한다)를 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초 3주 이내에 전과 신청서(소정서식)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전과한 자는 변경된 학과(전공)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의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심사(학점인정)를 거쳐 인정된 학점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절 수강신청 및 연구등록

**제23조(수강신청)** ①재학생은 「학칙」에 규정된 학기당 수강학점 범위 안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

②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직접 변경, 추가 하여야 한다. 위 기간 경과 후 폐반, 분반, 합반 또는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, 추가하게 할 수 있다.

③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업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,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, 1992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부터는 학사경고를 한다.

④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.

⑤「학칙」 제20조에 의거 학사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중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**제24조(수강신청과목의 변경 및 추가)**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직접 변경, 추가하여야 한다. 위 기간 경과 후 폐반·분반·합반 또는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, 추가하게 할 수 있다.

**제25조(학사과정 수강철회)** ①학사과정 학생이 수강 중인 과목을 학기 중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내에 2과목까지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원과정 교과목은 수강철회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수강철회 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'W'로 표시한다.

**제26조(학사과정 교과목의 재수강)** ①학사과정에 한하여 기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+~F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+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기취득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. 다만, 재수강 성적이 과락(F)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.

③재수강으로 기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27조(법학전문대학원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의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특례)**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중인 과목의 학기 중 철회 또는 재수강을 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②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에서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**제28조(대학원과정 연구등록)**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는 수료 직후 연속으로 4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, 4학기 경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한다.

②연구등록생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
③연구등록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④연구등록생의 수강신청,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 3 장 교육과정

###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

**제29조(교육과정 편성)** 교육과정은 대학의 공통핵심역량인 '학생성공역량'에 따라 편성하며, '학생성공역량'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글로벌
2. 자기주도성
3. 기업가정신
4. 융합
5. 시민의식

**제30조(교과목의 구분)** ①학사과정의 교과목은 성균교양(중점·균형)과목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.

1. 성균교양(중점·균형)과목은 학생성공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성·리더십·융합·소통·창의·소프트웨어·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중점교양 과목, 인간·사회·자연에 대한 균형잡힌 안목을 강화하는 균형교양 과목들로 구성되며, 그 교육적 학문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|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
| 중점교양영역 | 성균인정·리더십  |
|        | 고전·명저     |
|        | 창의        |
|        | 의사소통      |
|        | 미래(SW/AI) |
|        | 글로벌       |
| 균형교양영역 | 인간/문화     |
|        | 사회/역사     |
|        | 자연/과학/기술  |
|        | 인문사회과학기반  |
|        | 자연과학기반    |

2. 전공과목은 전공분야의 전문학술적 이론을 탐구 학습하는 과목과 이의 검증 및 체득을 위한 실험·실습·실기 과목들로 구성되며, 전자는 그 교육적·학문적 수준에 따라 전공핵심 과목과 전공일반 과목으로 구분한다.

3. 선택과목은 자격증 취득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수하는 교직과목, 평생교육사과목, 군사학과목과 교양, 전공에 속하지 않은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.

②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은 전공과목과 선택과목(교육대학원 교직과목 포함)으로 구분한다.

③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표에 따른다.

**제31조(학사과정 성균교양(중점·균형)학점의 이수)** ①학사과정 성균교양(중점·균형)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지정된 성균교양(중점·균형)학점의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이상을 해당 영역의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직을 이수하는 자가 기초인문사회과학영역의 '교육학입문'을 이수할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.

②「학칙」제43조에 의한 편입학자, 제25조 3항의 모집단위 이동 학생 및 제20조에 의한 외국인 입학생의 성균교양(중점·균형)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32조(학사과정 전공학점의 이수)** ①학사과정 전공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핵심과목과 전공일반과목 및 실험실습과목을 각각 지정된 최소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②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표에 따라 복수전공자에게 지정된 전공핵심과목, 전공일반과목 및 실험실습과목을 각각 최소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학사과정 선택학점의 이수)** ①학사과정 선택학점은 학과별 수료학점에서 교육과정표에 따라 이수한 성균교양(중점·균형)학점과 전공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선택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
2. 선택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(단,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은 제외)

**제34조(대학원과정 학점의 이수)** 각 대학원의 재학생은 해당학과(전공)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취득한 학점이 「학칙」 제34조에 규정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정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35조(국제어수업 학점 이수)** ① 「학칙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은 성균교양(중점·균형)영역 6학점 이상, 전공영역 12학점 이상의 국제어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 학생은 성균교양(중점·균형)영역과 전공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하고, 편입학자는 성균교양(중점·균형)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한다.

②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3학점 이상,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6학점 이상 전공영역국제어수업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학문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어강의 이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36조(대학원과정 선수학점)** ①대학원과정의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와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말하며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**제37조(교육대학원 교직학점의 이수 및 논문학점 부여)** ①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직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범대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②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논문 6학점을 당해 학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.

**제38조(특별학점 취득)** ①우수학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목에 대해 ‘학점 취득특별시험’에 응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특별학점취득대상 과목은 학부대학장이나 학장이 따로 정하며, 해당과목의 학점은 1학년 및 1기 성적으로 인정한다.

③특별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은 「학칙」 제36조 및 제37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**제38조의2(입대휴학자의 학점취득)** ①병역의무 이행 중인 입대휴학자 중 본교의 지정된 온라인수업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입대휴학자의 학점취득은 학기당 3학점,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최대 6학점까지이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**제39조(도전학기 혁신융합수업)** ①「학칙」 제13조제4항에 따른 도전학기 기간에 혁신융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혁신융합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③학사과정 혁신융합수업의 학년도 당 수강학점은 「학칙」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학기당 수강학점 이내로 하며, 혁신융합수업에서 취득한 수강학점, 이수학점, 취득성적은 각각 다음 학기에 인정한다.

④대학원과정 혁신융합수업의 학년도 당 수강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하며, 혁신융합수업에서 취득한 수강학점, 이수학점, 취득성적은 각각 다음 학기에 인정한다.

⑤혁신융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다음 학기에 3학점 범위내에서 해당 혁신융합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수 만큼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.

⑥혁신융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**제39조의2(학사과정 계절수업)** ①학사과정의 계절수업은 매학기 종강 후 방학동안 단기집중 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할 수 있다.

②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휴학생은 재적기간 중 최대 2회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, 계절수업 수강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복학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.

1.당해학기 본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

2.학술교류 협정에 의거 소속대학 총장으로부터 수학을 추천받은 타교생

③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④계절수업(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, 교내 국제학기를 포함한다)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, 연간 총 9학점 이내로 하되,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프로그램의 경우 각 계절수업당 수강학점 또는 연간 총 수강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⑤수강신청 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은 폐반한다.

⑥계절수업의 취득성적은 졸업·전공배정·복수전공배정 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며, 전과·학사경고·유급·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.

⑦계절수업의 성적평가는 이 세칙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.

⑧학적부의 성적표시는 ‘계절수업’으로 한다.

**제40조(집중과정)** ①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과(부)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름방학 기간 중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집중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③학사과정에 개설한 집중과정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며, 집중과정의 수강학점, 이수학점, 취득성적은 각각 해당 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, 이수학점, 취득성적으로 한다.

④집중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**제41조(학사과정생의 대학원교과목 수강)** ①대학원교과목 중 학석공통과목은 학사과정생의 수강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고, 학점 취득시 학사과정 전공학점(전공일반)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학사과정 학생이 취득한 대학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대학원개설과목임을 표기한다.

**제42조(학석사연계과정)** ①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②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6학점(전문대학원 학술연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학생은 9학점)까지 대학원 석박공통과목(팀연구프로젝트 포함)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,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각각 인정한다.

1. 학사과정 전공학점(전공일반)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
2. 학사학위 취득 직후 대학원과정 입학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
## 제 2 절 학점인정, 조기졸업 및 수업연한 단축

**제43조(학점인정)**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적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한다.

②대학원 신입학생의 타대학원 취득성적은 일반대학원 9학점, 전문대학원 15학점, 특수대학원 6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

③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일반대학원 9학점, 전문대학원 15학점, 특수대학원 6학점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제44조(학사과정 조기졸업)** ①학사과정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초(제6학기 또는 제7학기, 다만 건축학과는 제8학기 또는 제9학기) 지정기간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조기졸업신청 자격은 제5학기 또는 제6학기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4.00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신청 자격은 3.50이상으로 한다.

③조기졸업신청자로서 「학칙」 제40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성적 총평점평균이 4.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인정은 「학칙」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, 성적총점평균평점이 3.50이상인 자 가운데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1. 대학원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한 자

2. 대학원 제1학기 등록을 필한 자

**제45조(대학원과정 수업연한 단축)** ①제38조, 제42조,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일반대학원 6학점 이상, 전문대학원 12학점(학술연구과정은 9학점) 이상, 특수대학원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.

②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(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또는 13학기) 내에

충족시킨 자는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.

③제40조 규정의 집중과정을 이수하여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3학기(특수대학원은 4학기) 내에 충족시킨 자는 각각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「학칙」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.

### 제 3 절 시험과 성적

**제46조(학사과정 성적평가)** ①학사과정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(A<sup>+</sup>·A)은 30퍼센트 이내이며, A등급(A<sup>+</sup>·A)과 B등급(B<sup>+</sup>·B)의 합은 65퍼센트 이내로 한다. 그러나 전공일반과목의 경우는 A등급은 40퍼센트 이내,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5퍼센트 이내로 한다. 다만, 대학원과정생과 교환학생, 정부초청장학생, 외국정부지원장학생은 이 수강인원과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수강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, 대학장이 인정하는 국제어수업 과목, 교직과목, 실험실습과목, 실기과목, 글로벌리더학부·글로벌경제학과·글로벌경영학과·소프트웨어학과·반도체시스템공학과·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·약학대학·의과대학의 전공과목, 군위탁생과목, 학부대학장이 지정하는 성균교양(중점·균형)과목, 글로벌리더학부·글로벌경제학과·글로벌경영학과·소프트웨어학과·반도체시스템공학과·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개설된 성균교양(중점·균형)과목(이 경우에도 A등급은 50퍼센트 이내,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90퍼센트 이내로 함)
2. 교육실습·현장실습 교과목,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학습 교과목,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성취중심 절대평가 교과목 및 아이캠퍼스 MOOC 교과목

#### 3. <삭 제>

③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47조(성적의 공시 등)**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 후 지정기간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
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.

③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.

④출석부는 3년간, 과제보고서·실험실습보고서·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자료는 10년간 교과목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48조(성적의 취소와 정정)**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총장이 이를 취소한다.

1.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
2.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
3.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주어진 성적(교육실습성적은 제외)
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.

1.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성적의 전부(교육실습성적은 제외)
2.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
3. 시험 부정행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
4. 시험 부정행위로 4주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(교육

실습성적은 제외)

③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행정시스템을 통해 성적 정정을 청원하여 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.

**제49조(성적 평점평균의 산출)** 성적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 다만, 「학칙」 제39조제1항 및 이 세칙 제44조와 제50조에 규정한 졸업에 필요한 평점평균은 평점합계를 취득학점합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한다.

**제50조(졸업성적)** 「학칙」 제39조 및 제40조의 졸업에 필요한 성적 평점평균은 학사과정은 2.5이상, 대학원 과정은 3.0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사과정의 체육특기자 및 외국인학생(국적기준)의 경우에는 2.0이상으로 한다.

#### 제 4 절 학사과정 유급 및 복수전공

**제51조(유급)** ①유급은 학년 단위로 한다. 단, 「학칙」 제50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유급하는 경우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.

②「학칙」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유급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
**제52조(복수전공 신청절차 등)** ①「학칙」 제49조 제2항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(변경)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복수전공이수(변경)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복수전공 이수(변경)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3조(복수전공 이수학점)** ①복수전공 이수자의 성균교양(중점·균형)과목 이수는 제1전공 학과의 성균교양(중점·균형)과목 이수에 따른다.

②복수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이내에서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.

③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소속 학과와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이내에서 소속 학과의 전공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전공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.

④복수전공 이수 신청 전에 선택학점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제54조(복수전공의 제한)** ①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을 복수전공 할 수 없으며, 사범대학 각 학과는 사범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할 수 있다.

②복수전공 희망자가 특정 전공에 집중될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글로벌리더학부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5 절 학사과정 졸업평가 및 3품인증

**제55조(졸업평가)** ①졸업평가는 연구논문, 실험실습보고서, 실기발표, 종합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.

②졸업평가 유형, 평가시기, 평가절차, 평가기준, 평가유효기간 등 졸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③졸업평가에 불합격하고 다른 졸업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졸업 평가에 다시 응하여 합격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, 학위수여 시기는 합격학기 졸업일로 한다.

**제56조(3품인증)** ①「학칙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학사과정의 3품은 다음과 같다.

1. 인성(필수)

2. 글로벌(선택)
3. 창의(선택)
4. AI(선택)
5. 인턴십(선택)

②3품은 인성분야를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③3품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졸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3품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, 학위수여시기는 3품인증 취득학기 졸업일로 한다.

④3품인증의 각 분야별 취득기준, 적용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## 제 4 장 학사과정 시간제등록생 및 군위탁편입생

**제57조(시간제등록생)** ①시간제등록생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등록허용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.

②시간제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 다만, 다른 대학(교)에 재학(휴학)중인 자는 시간제등록생이 될 수 없다.

**제58조(시간제등록생의 학점취득 등)** ①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당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, 계절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.

②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절차 및 수업운영, 등록금반환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**제59조(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요건)**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에게는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본교에서 성균교양(중점·균형)과목 30학점 이상, 전공과목 45학점 이상, 총 8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2. 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」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시 요구되는 140학점 이상(교양 30학점 이상, 전공 60학점 이상)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
3. 「학칙」 제52조에서 정한 학점은행제에 따른 본교 학사학위 수여가능 전공을 이수한 자

**제60조(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절차)** ①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」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학사학위신청서와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서를 본교 학위수여예정일 1개월 전 지정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59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한다.

③총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61조(군위탁 편입학생)** ①군위탁 편입학생(“군위탁생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.

②군위탁생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으로 편입학하며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.

③군위탁생의 편입학 시기, 학점인정,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 등은 일반편입학생에 대한 사항을 적용한다.

## 제 5 장 대학원 논문제출 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

### 제 1 절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

**제62조(논문제출자격시험)**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응시대상·자격·절차·시험과목·평가기준, 출제위원 선정 및 면제기준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## 제 2 절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지도

**제63조(학위청구논문 지도)** ①대학원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학위논문”이라 한다) 지도교수(이하 “지도교수”라 한다)의 선정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의 의사·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학장이 정한다. 다만,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교원, 석좌교원,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 선정시기·절차, 변경, 복수지도교수, 지도교수 1인당 학생수 등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 다만, 복수지도교수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속학과 명예교원,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, 지도교수 1인은 반드시 소속 학과 전임교원으로 정하여야 한다.

**제64조(학위논문예비심사)** ①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논문 예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 다만, 심사위원은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석사과정에 한하여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정해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제 3 절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의 제출

**제65조(일반·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)** ①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석사과정 심사신청 시 수료학점 취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1. 공통 사항: 수료에 필요한 학기(인정학기 포함) 등록
2. 일반대학원: 수료학점(박사과정은 33학점이상) 및 선수학점을 취득하고(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) 그 평균성적이 3.0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(면제). 다만,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가운데 입학 시 한국어능력을 인증 받지 않은 자는 논문심사 신청 시까지 소정의 한국어능력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, 한국어능력인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3. 전문대학원: 소정의 학점(학장이 내규로 정함) 및 선수학점을 취득하고(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) 그 평균성적이 3.0이상(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.3이상)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(면제)
4. 일반·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추가 사항: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(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)이상 발표(논문게재증명서 포함)
5.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

②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**제66조(특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)** ①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심사신청 시 수료학점 취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1. 수료학점 및 선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(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) 그 평균성적이 3.0이상
2.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(면제)
3.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

②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범대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③학위논문 심사 및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**제67조(학위논문제출의 면제)** ①학장은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일반대학원 석사

과정 및 전문대학원 학술석사과정의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을 대학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6학점 추가 이수 또는 학위논문제출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.

1. 6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

2. 대학내규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

③학위논문제출 면제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④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4 절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

**제68조(학위논문 심사)** ①심사방법·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② 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3인 이상

2.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: 5인 이상

③학위논문 심사결과는 ‘합격’, ‘불합격’으로 판정하며,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석사학위논문 : 심사위원의 2/3이상이 ‘합격’ 판정

박사학위논문 : 심사위원의 4/5이상이 ‘합격’ 판정

**제69조(학위논문 제출)** ①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(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)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유예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을 때 제출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한다.

③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 합격을 취소한다.

④학위논문(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) 제출, 인쇄물 제작, 학위논문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.

#### 제 6 장 석사학위 수여요건의 특례 및 학위수여의 취소

**제70조(석사학위 중 전문학위 수여요건의 특례)**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을 갖춘 자(기수료자 포함)가 추가로 다음 각 호중 1을 충족한 경우 학위논문 심사에 갈음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해당 전문·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

2. 추가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3.0이상(법학전문대학원은 2.3이상)인 자

**제71조(학위수여의 취소)** ①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# 제 7 장 대학원 연구과정·공개강좌

**제72조(연구과정)** ①연구과정은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대학원수업에 출석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

한다.

②연구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

③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.

④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해당대학원의 해당학위과정에 준하며 1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⑥연구과정의 수강신청요령, 출석, 휴학, 제적, 퇴학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 석사과정의 규정에 준한다.

**제73조(공개강좌)** ①대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·교양 또는 전문적인 학식·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

③공개강좌의 개설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8 장 위원회

### 제 1 절 일반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

**제74조(설치 및 구성)** ①일반대학원 각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 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.

③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5조(기능)**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
2.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
3.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
4.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장이 위임하는 사항

**제76조(보고 및 승인)**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심의사항 중 주요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 2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

**제77조(설치 및 구성)**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및 해당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.

**제78조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
2.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3.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
4.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79조(회의)**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 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

**제80조(설치 및 구성)** ①각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기관으로 필요에 따라 대학원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교내·외 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.

③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1조(회의)**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안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붙인다.

### 제 9 장 기타사항

**제82조(학적부 및 학적세부사항)** ①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·학적변동·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.

②학적부의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.

④휴·복학, 유급, 제적, 재입학, 수료 및 졸업 등 학생 학적의 생성·변동·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**제83조(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)** ①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의 종류,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②학생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세칙의 폐지)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(학사과정) 및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(대학원과정)은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2019년 8월 30일 이전 세칙에 포함된 부칙은 개정세칙에도 적용하되, 조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조항에 그대로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5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세칙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세칙 제56조제1항의 3품인증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개정 3품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사과정 성적평가 기준 변경) 제46조 제1항의 성적평가 등급별 분포 기준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A등급은 40퍼센트 이내,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80퍼센트 이내로 적용하기로 한다.